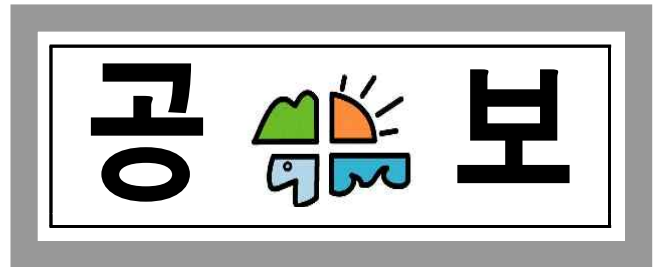


# 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|        |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|
| 선<br>람 | 기 관 의 장 |
|        |         |



제1347호 2021년 9월 23일(목)

## 조 례

-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..... 2
- 속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..... 5
-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..... 11
-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..... 11

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1년 9월 23일

속 초 시 장



속초시 조례 제2859호

###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“단체관광객”이란 내외국인으로서 속초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.) 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속초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.)”을 “시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외국인 전용 관광택시”를 “관광택시”로 한다.

별표에 다음 비고 사항을 추가한다.

재난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)에 따라 단체관광객 인원모집이 어려울 경우, 인원기준을 50% 완화하여 적용(재난종료 시까지 한시적 적용)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1년 9월 23일

속 초 시 장

인

속초시 조례 제2860호

### 속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

속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)”를 “(전자수입증지 등에 의한 납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 본문 중 “조례에”를 “조례에서”로, “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”를 “전자수입증지, 현금,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1년 9월 23일

속 초 시 장

인

속초시 조례 제2861호

###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

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”을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」”으로, “제14조 에”를 “제14조에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”을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4호 중 “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8조”를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8 조”로 한다.

제30조제2항 단서 중 “감정평가업자(이하 “감정평가업자””를 ““감정평가법인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감정평가업자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”으로 한 다.

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9항”을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의2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“「조세특례 제한법」 제121조의2제1항”을 “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1 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 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46조”를 “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

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6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22호”를 “제22호 및 제23호”로, “제25호”를 “제25호 및 제26호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·수익허가 받은 행정재산 또는 영 제 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부받은 일반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.

제34조 중 “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”를 “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한다”로 한다.

제3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400만원 초과 : 12개월 이내 6회분납

제40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재산의 위치·규모·형상·용도 등으로 보아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

13. 「사도법」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
제64조 후단 중 “감정평가업자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1년 9월 23일

속 초 시 장

인

속초시 조례 제2862호

###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제4조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외부인사를 조사원이나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조사원이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